#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해용	810916-*****	

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огн	보수월액(	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165,740	14,100	0	0
02월	165,740	14,100	0	0
03월	165,740	14,100	0	0
04월	166,680	14,180	0	0
05월	166,680	14,180	0	0
06월	166,680	14,180	0	0
07월	166,680	14,180	0	0
08월	166,680	14,180	0	0
09월	166,680	14,180	0	0
10월	166,680	14,180	0	0
11월	166,680	14,180	0	0
12월	166,680	14,180	0	0
연말정산	33,240	2,490		
합계	2,030,580	172,410	0	0
총합계				2,202,99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해용	810916-*****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10,600	0
02월	210,600	0
03월	210,600	0
04월	210,600	0
05월	210,600	0
06월	210,600	0
07월	218,700	0
08월	218,700	0
09월	218,700	0
10월	218,700	0
11월	218,700	0
12월	218,7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0	
실업크i	0	
합계	2,575,800	0
	2,575,80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해용	810916-*****	

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	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	
	우정사업본부		(무)큰병큰보장				
보장성	101-83-02	2***	70212047	615	810916-*****	이해용	117,000
	디비손해보험	주식회사	다이렉트100세건	강보험0904			
보장성	201-81-45	5***	288092282	2640	810916-*****	이해용	476,520
	한화손해보험 ( 주 )		무배당 하이브리드운전자				
보장성	116-81-46	5***	LA201185257	799000	810916-*****	이해용	420,000
	우정사업본부		정기만기	7			
보장성	101-83-02***		70018151561		810916-*****	이해용	818,400
	우정사업	로부	평생암보장				
보장성	101-83-02	2***	70070467448		810916-*****	이해용	164,4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해용	810916-*****	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	수익자)	종피보험자2(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현대해상화재보	.험 (주)	하이카 개역	인용			
보장성	102-81-32	2***	M2019G72892	2600000	810916-*****	이해용	609,830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하이카 개인용				
보장성	102-81-32	2***	M2018D49725	5000000	810916-*****	이해용	3,410
	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		해외여행자보험				
보장성	104-81-30***		FALI20190073005		810916-*****	이해용	4,090
	인별합계금액		2,613,6			2,613,650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광우	551225-*****	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ļ.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증권번호 주피보험자	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	
	농협생명보험 <sup>:</sup>	주식회사	(무)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					
보장성	104-86-39	)***	000941018076332		551225-*****	박광우	268,800	
	인별합계금액		2				268,800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해용	810916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90-88***	하****	일반	30,000
**6-02-67***	백***	일반	23,600
**9-94-00***	참*****	일반	8,000
**2-25-07***	관****	일반	4,000
**8-01-00***	ភ៎*****	일반	36,100
**7-32-00***	봄***	일반	6,300
**2-99-00***	서******	일반	66,3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74,3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74,3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광우	55122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90-88***	하****	일반	39,400
**4-92-93***	경*****	일반	1,060,900
**4-13-18***	실****	일반	2,800
**4-23-29***	건****	일반	84,000
**4-22-78***	0 ***	일반	71,400
**4-82-06***	건*****	일반	2,587,420
**7-90-57***	제*****	일반	6,300
**4-25-55***	관****	일반	37,400
**4-91-37***	훈**	일반	4,200
**4-24-45***	⊏****	일반	646,600
**4-90-14***	제****	일반	5,200
**4-90-35***	소****	일반	2,162,500
**4-92-74***	신*****	일반	47,480
**4-09-94***	원***	일반	4,6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광우	55122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4-28-41***	건****	일반	31,100
**0-91-00***	나******	일반	104,700
**9-10-00***	건****	일반	145,200
**1-33-61***	맨****	일반	2,500
**4-53-00***	올*****	일반	8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,051,7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,051,7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해용	810916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7,755,686	0	2,610,610	0	10,366,29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일반	5,725,086
신용카드	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대중교통	2,610,61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1,982,770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47,830
인별합	계금액			10,366,296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0121-2351550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9-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광우	551225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400	0	107,500	0	109,900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2,40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107,500
인별합계금액				109,9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광우	551225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0,220,510	212,300	0	0	10,432,810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14-81-37***	비씨카드 ( 주 )	일반	100
직불카드 등	109-82-04***	새마을금고중앙회	일반	270,130
직불카드 등	202-81-14***	주식회사 하나은행	일반	8,000
직불카드 등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9,942,280
직불카드 등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212,300
인별합계금액				10,432,81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해용	810916-*****		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427,068	0	0	0	427,068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 일반거래	2,035	64,486	2,056	75,326		
	일반거래	2,076	2,086	32,096	46,307	427,068
		131,547	26,067	2,138	40,848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광우	551225-*****	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280,080	0	0	0	1,280,08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고테디사그애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190,440	179,940	0	179,940	
		89,970	0	180,740	0	1,280,080
		188,340	90,770	0	179,94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# 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해용	810916-*****	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603-82-07337	(사)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10,000	1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1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14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